

★

문서번호	환경과-3367
결재일자	2015.2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담 당	환경기획담당	환경과장	도시환경국장
최창용	박종훈	하순호	02/05 김장수
협 조			



2015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계획

2015. 2

성 북 구
(환경과)

2015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계획

「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」(환경부예규 제520호 '14.9.29)에 의하여 2015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 함으로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.

I 현 황

□ 관련규정

-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1조 내지 제15조의3
- 「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」(환경부예규 제520호 '14.9.29)

□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

：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

계	주유소	기 타	비 고
33개소	29	4	기타시설 : 은행, 병원, 운수회사 등

○ 저장탱크 경과년도

구 분	계	10년미만	15년미만	20년미만	20년이상
경과년도	33개소	6	3	11	13
오염시설	3개소	-	-	-	3

※ 오염물질이 누출된 시설(3개소)은 20년이상 경과하여 노후한 시설임.

□ 토양오염 사업장 현황

사업장명	소재지	오염항목(mg/kg)	진 행 사 항
장삼주유소	한천로612 (장위동)	TPH:23,385 크실렌:698.6	토양정화명령 -이행기간:2015.10.23까지
원천주유소	돌곶이로 142 (하월곡동)	TPH:12,855	토양정밀조사명령 -이행기간:2015.3.31까지
장위주유소	화랑로 110 (하월곡동)	TPH:17,279 크실렌:69.9	토양정화명령 -이행기간:2015.8.4까지
새천년주유소 (폐업)	화랑로 180 (상월곡동)	TPH:2,520	토양정화명령 -이행기간:2015.8.18까지

<토양오염 우려기준>-주유소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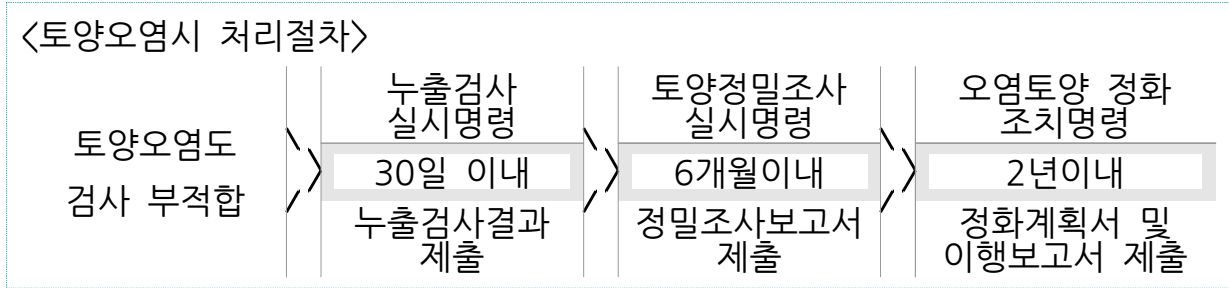
석유계총탄화수소(BTX)	벤젠	크실렌	톨루엔
2,000mg/kg	3mg/kg	45mg/kg	60mg/kg

II 추진계획

□ 토양오염검사 이행조치

- 토양오염도 검사
 - 저장시설 설치후 5년, 10년, 15년이 되는해 및 15년 경과시 매2년에 1회 검사
 - 시설의 양도·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, 시설을 폐쇄할 경우
- 누출검사
 -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- 저장시설 설치후 10년이 되는해 및 10년 경과시 매8년이 되는 해 1회 검사
- 토양오염 검사대상(13개소)

구분	시 설 명	소재지	저장탱크 설치년도	저장용량	비 고
누출 검사	국민은행	종암로 44	82.02.24	100,000 ℓ	
	sk네트웍스(주) 드림랜드주유소	월계로 128	87.05.25	30,600 ℓ	
	제삼주유소	안암로 17	89.10.07	77,000 ℓ	
	고려대학의과대학부 속병원	인촌로 73	91.03.18	68,000 ℓ	
	원천제1주유소	보국문로 52	05.11.03	200,000 ℓ	
	성북주유소	보문로 142	97.03.17	160,000 ℓ	
	현대주유소	삼양로 78	96.11.12	90,000 ℓ	
	화랑주유소	화랑로 185	92.04.27	90,000 ℓ	
토양 오 염 도 검 사	SK네트웍스(주) 아리랑주유소	아리랑로 96	98.12.10	172,000 ℓ	
	SK네트웍스(주) 한천로주유소	한천로 727	94.10.17	202,000 ℓ	
	고려주유소	종암로 17	98.08.06	140,000 ℓ	
	상진운수(주)	한천로76길 42	00.08.01	60,000 ℓ	
	신명에너지(주) 화랑로주유소	화랑로 174	98.05.25	240,000 ℓ	



□ 지도점검 실시

○ 정기점검

- 점검회수 : 년1회
- 점검대상 :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33개소
- 점검내용
 - ▷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유지관리 상태
 - ▷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 및 조치명령 이행여부 등

○ 수시점검

- 점검대상 : 오염토양정화명령 사업장 및 민원발생시설
- 점검시기
 - ▷ 토양오염물질 누출등의 사고 발생 또는 오염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
 - ▷ 토양오염검사 적정여부 확인필요시, 토양오염에 대한 민원발생시 등

○ 점검결과 조치사항

- 토양오염방지시설 부적정 관리
 - : 토양오염방지시설 개선보완조치 및 토양오염도검사 매년 이행조치
- 토양오염도검사 미이행 : 과태료(100만원) 부과 및 이행명령
- 기타 경미한 사항 : 현장 시정조치

Ⅲ 행정사항

- 해당시설에 토양오염검사(오염도, 누출)시기 안내 및 이행동려
- 노후시설(20년 경과)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시설 관리철저 협조요청